

사업의 폐지 · 변경의 의미

"사업의 폐지 · 변경"이란 행정청의 도시계획사업의 폐지 ·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업집행자에 대한 사업시행 허가의 취소로 그 사업이 폐지 · 변경 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. (대법원 1978.11.01. 선고 78다1369 판결)